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6. 11. 김형동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 6. 1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 11. 14.) 상정·제안설명·

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 상정·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 4. 7.) 상정·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형동의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500년 빈도 이상의 폭우와 수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가뭄은 1970년대 이후 5~7년 주기로 발생하는 등 극한 홍수 또는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강도는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 홍수 피해가 지방·소하천 구간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뭄은 물공급 취약지역에서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 및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기술, 예산 등 재난관리 역량 부족으로 사전 예방적 물관리보다는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후복구에 치중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구축·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홍수·가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재해 예방·복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예방적 물관리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신항진 수석전문위원)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물재해 대응에 필요한 기술·정책 등 지원을 위해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37조제2항 11호의2 신설).

개정안에 따라 유역 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유역수도지원센터 및 유역하수도지원센터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수립, 사고예방 및 현장 대응에 필요한 기술·정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및 지원센터 관련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김형동 소위원장)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도록 수정하여 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수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도록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가.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수정함(안 제26조의2).

나.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26조의2제2항).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6조의2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요구”를 “요청”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26조의2(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립·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에 필요한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물재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6조의2(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립·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 ----- ----- ----- ----- ----- ----- ----- -----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

	<u>③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지원센터 의 설립·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u>	<u>청에 따라야 한다.</u> ③ ----- ----- ----- ----- <u>요청</u> ----- ----- <u>기</u> <u>후에너지환경부장</u> <u>관</u> ----- ---.
--	--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립·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에 필요한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자료제출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제2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26조의2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업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6조의2(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립·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에 필요한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u> <u>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자료제출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3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	제3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11. (생략) <u><신설></u> 12. · 13. (생략)	----- ----- ----- -----. 1. ~ 11. (현행과 같음) <u>11의2. 제26조의2에 따른 지원</u> <u>센터의 설립·운영 업무</u> 12. · 13. (현행과 같음)
---	--